

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

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,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,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2010년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〈편집부〉

1.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

환경부 교통환경과(☎ 02-2110-6859, 6858)
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개정('10. 1. 6)에 따라 '10. 7. 1일부터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개선하고,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·반영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됩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
1.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행차 종류를 「대기환경보전법」과 「자동차 관리법」이 달리 구분 • 제작일자 3단계 구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이 알기쉽게 「자동차 관리법」으로 통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용자동차, 소형 승합자동차, 소형 화물자동차 • 제작차 기준 반영하여 제작일자 4단계 구분 ▶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'10. 7. 1)
2. 운행 휘발유·가스자동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행 휘발유·가스자동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은 '02년 도입 당시 완화된 미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대기개선 효과 미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선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제작연식별로 차등 적용하고, 미국 EPA, 버지니아주 기준 등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개선 ▶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	
3.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방법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휘발유·가스차 : 무부하정지가속 [저속 공회전] • 경유차 : 여지반사식, 광투과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휘발유·가스차 : 무부하정지가속 [저속 + 고속 공회전] • 경유차 : 광투과식('11. 1. 1일부터) ▶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 	환경부 교통환경과 (02-2110-6858)
4. 운행차 정밀검사 방법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휘발유·가스차 : ASM2525 [정속모드] • 경유차 : Lug-Down3모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휘발유·가스차 : 공회전 *ASM2525 [정속모드] • 경유차 : 한국형 경유147 [KD-147모드] ▶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6 	

2.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

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(☎ 02-2110-7932)

-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, 수도,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포인트를 부여하여,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·상품권·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합니다.

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운영프로그램(www.cpoint.or.kr)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1.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	•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- 100만세대('10. 5)	•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- 200만세대(10년 말)	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(환경부 고시 제 2010-25호)
			▶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(환경부 고시 제2010-25호)
			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(2110-7932)

3.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,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(☎ 02-2110-6942)

- '10. 2. 3일 제7차 녹색위에서 확정된 「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」에 의하여, 금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을 시작합니다.

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('10. 7월, 5개 지자체) / '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' 개정('10. 7월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1.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	•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 부과	• 분리배출 대상 144개 시·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작	폐기물관리법('08. 12. 22)
			환경부 폐자원관리과(02-2110-6925)

4.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

환경부 자연자원과(☎ 02-2110-6748)

- 입장료 폐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을 예방하고, 노약자 및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둘레길을 조성하여 수평 탐방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.

주요내용 :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63km 탐방로 조성

- 총 사업내용 : 사업기간 '10 ~ '12, 사업연장 63.2km, 사업비 290억원 - '10년 사업내용 : 사업연장 10.4km, 사업비 30억원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1.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	• 연간 900만명의 탐방객이 정상정복 형 탐방 실시	• 총 63km의 둘레길 조성으로 정상 정복형 탐방문화를 지양하고 수평형 탐방문화 활성화	해당없음
			환경부 자연자원과(02-2110-6748)

5.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구성·운영

환경부 자연정책과(☎ 02-2110-7749)

- 세계자연보전총회(WCC, World Conservation Congress)는 자연분야 세계최대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이 자연보전, 생물다양성,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환경관련 회의입니다.
-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, 지원위원회 등 전담·지원 조직이 구성·운영될 예정입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
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	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- 세계자연보전총회 재정지원을 위한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 수행 - 총회 개최를 위한, 행사기획, 시설지원, 국제협력 홍보활동 수행 ◆ 세계자연보전총회 홈페이지 www.wcc2012.or.kr 	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('10. 5. 17)
			환경부 자연정책과(02-2110-7749)

6.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

환경부 정책총괄과(☎ 02-2110-6686)

- 친환경건축물이고 에너지 절약이 우수한 건축물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.
- 주요내용
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
*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시행령 시행('10. 11. 26)
2009. 9. 1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 관계 부서
환경개선부담금 감면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물 (신규) • 경유자동차 - 유로-5 경유 자동차 3년간 50%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• 유로-5 경유자동차 3년간 면제 *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규정 (환경부고시 제2009-95, 2009. 7. 2)을 개정하여 2010년 하반기(9월) 부과시 부터 적용 	환경개선비용부담법('10. 11. 26)
			환경부 정책총괄과(02-2110-6686)